

질 의 답 변

건명 : 서울용강초 급식실, 학생식당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설계공모

연번	질의 내용	답변 내용
1-1	스탠드 관련 시설 철거 및 사면 지반평탄화 작업, 서측 옹벽 개축 공사가 설계 업무범위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?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추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는 것인지?	• 모두 금회 설계 업무범위 및 예정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- 서측 4m 도로와 학교 대지 사이 옹벽 개축 ↳ 공모지침서 III. 설계지침 1.2 다. 4) - 흙막이 공사, 옹벽공사(H=6m) 270㎡, 승강기 1대, 외부포장공사 400㎡ ↳ 과업지침서 1.3 7) (4) 그 외 과업범위 - 기존 시설 철거, 시설 이전, 조경수·배수로 정비 등 부대공사 ↳ 공모지침서 2.1 가. 8)
1-2	현장설명회에서 트랙을 옮기는 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트랙을 유지한채로 계획을 해야하는지? (사전기획은 트랙을 없애버렸음)	• 증축동 배치 및 차량동선 확보에 따라 훼손이 불가피한 범위의 트랙 우레탄 포장 복구(400㎡)는 반영되어 있음. • 조정 한도는 [질의 2-3] 참조
1-3	연결통로 면적은 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는지?	• 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1-4	체육관 홀 상부 옥상을 사용해서 계획을 해도 되는지?	• 기존 체육관 상부 옥상은 설계 계획 범위가 아님.
2-1	현황측량도나 레벨값이 있는 배치도 요청.	• 현황측량도(2008. 3. 기준)를 에듀디자인 공지사항에 추가 게재합니다. 아울러 아래 자료에도 레벨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사전기획보고서 p.19 : 대지 중·횡단면도 - 사전기획보고서 p.38 : 배치가능영역 검토 도면(현황 표고 표기) - 지반조사보고서(2011. 7. / 2019. 4.) 조사위치도 • 정확한 대지경계 및 레벨은 당선자가 설계 착수 후 현황측량 및 경계명시 측량을 통해 확정하여야 합니다 (공고서 2. 라.5)).
2-2	1층 창고(현장설명회장소)부 도면이 실제와 상이함. 해당부 실제현황처럼 설계반영하는지 확인요청	• 제공된 CAD 도면은 발주기관이 보유한 자료이며, 준공도면 등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도면은 없습니다. 기존 건축물의 정확한 현황은 당선자가 설계 착수 후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합니다(공고서 2. 라.5)).
2-3	증축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트랙및 일부 운동장 조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한지 검토요청.	• 가능합니다. 다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로 한정합니다. - 증축동 배치, 급식·소방차량 접근로 및 회차로, 보차분리 동선 확보에 필

		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- 조정 후 체육장(운동장) 면적이 법정 확보면적 이상일 것 - 조정 후에도 트랙을 이용한 체육수업 및 학교행사 운영이 가능한 여건이 유지될 것 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면적(㎡)</td></tr><tr><td>체육장 기준면적 (A)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·운영 규정」 별표2</td><td>3,000</td></tr><tr><td>실내체육시설 면적의 2배 공제 (B) (강당 620㎡ + 체육실 92㎡ = 712㎡)</td><td>△1,424</td></tr><tr><td>법정 확보 필요 외부 체육장 면적 (C = A-B)</td><td>1,576</td></tr><tr><td>현황 운동장 면적 (D)</td><td>1,890</td></tr><tr><td>조정 가능 범위 (E = D-C)</td><td>314</td></tr></table>	구분	면적(㎡)	체육장 기준면적 (A)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·운영 규정」 별표2	3,000	실내체육시설 면적의 2배 공제 (B) (강당 620㎡ + 체육실 92㎡ = 712㎡)	△1,424	법정 확보 필요 외부 체육장 면적 (C = A-B)	1,576	현황 운동장 면적 (D)	1,890	조정 가능 범위 (E = D-C)	314
구분	면적(㎡)													
체육장 기준면적 (A)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·운영 규정」 별표2	3,000													
실내체육시설 면적의 2배 공제 (B) (강당 620㎡ + 체육실 92㎡ = 712㎡)	△1,424													
법정 확보 필요 외부 체육장 면적 (C = A-B)	1,576													
현황 운동장 면적 (D)	1,890													
조정 가능 범위 (E = D-C)	314													
3-1	현황측량 도면 제공 요청, 계획 검토를 위해 대상 부지의 최신 현황 측량 도면 제공을 요청드립니다.	• [질의 2-1] 참조												
3-2	다목적강당 필로티 증축 현황도면 제공 요청, 다목적강당 필로티 부분에 최근 증축된 VR스포츠실을 포함한 최신 현황도면 제공을 요청드립니다.	• [질의 2-2] 참조												
3-3	스페이스 프로그램상 필로티 면적 기준 관련 질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제시된 필로티 면적의 준수 여부 및 계획 과정에서 조정 가능한 허용범위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	• 필로티 면적 163.5㎡는 계획 면적이며, 허용범위 ±3%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 아래 기능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적을 조정하여 계획할 수 있습니다. - 부설주차장 6대 신설 - 급식·소방·택배차량의 통행 및 회차 가능 - 급식 및 택배차량 유효높이 2.9m 이상 확보 • 다만 필로티를 임의로 생략할 수는 없으며, 위 기능을 수용하는 공간은 반드시 계획하여야 합니다.												
3-4	운동장 면적 축소 가능 여부 질의 계획안에 따라 기존 운동장 면적이 일부 축소될 경우 계획 및 관련 기준상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	• [질의 2-3] 참조												

3-5	면적 산정 기준 관련 질의 계획안의 각 실 및 시설 면적은 제공된 면적산정용 파일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	• 제공된 「(양식) 건축면적 및 연면적 산정용 CAD 파일」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 - 기존 건축물 : 기둥 중심선 기준으로 산정 - 금회 증축 건축물 :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의2에 따라 산정 - 면적산정용 구획도는 평면도 상 Polyline으로 작성하여 USB에 포함 제출 (근거 : 공모지침서 [서식8] 비교, p.9 3.3 다.1))
4-1	지침서 4페이지의 기준 연면적은 7,114.16㎡이고, 건축물대장 기준 연면적은 7,130.66㎡입니다. 참고로 사전기획보고서 4페이지에도 기본현황 연면적(7,114.16㎡)과 기존 건축물 현황 연면적(7,130.66㎡)이 상이합니다. 이에 기준 연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바랍니다.	• 기준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상 7,130.66㎡입니다.
4-2	지침서 4페이지의 기준 학생수는 499명이고, 20페이지 스페이스프로그램에는 453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전기획보고서 56페이지 기준 예상 학생수는 558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이에 급식실 면적 산정 및 운동장 면적 산정을 위한 학생수의 기준은 몇 명인지 확인바랍니다.	• 급식실 규모 “공모지침서 20p” 및 “과업지침서 2p” 스페이스프로그램 참조 ※ 사전기획보고서 p.56의 558명은 체육장 기준면적 산정에 적용된 학생수이며,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·운영 규정」 별표2상 초등학교는 학생수 600명 이하 구간의 기준면적이 모두 3,000㎡로 동일하므로, 499명을 적용하더라도 산정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.
4-3	사전기획보고서 56페이지 기준, 운동장 면적은 1,890㎡이고, 실내 체육시설 면적은 712㎡임. 이를 기준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운동장 면적을 산정하면 되는것인지 확인바랍니다.	• [질의 2-3] 참조
4-4	금회 급식실 및 학생식당, 특별교실 증축사업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차량진입 동선 계획으로 일부 운동장 및 트랙의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증축 가능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여 제공 바랍니다.	• [질의 1-2], [질의 2-3] 참조 • 증축 위치는 공모지침서 III. 설계지침 1.2 다.1)에 따라 '운동장 서측, 서측 스탠드 구역 ~ 다목적강당과 연결이 가능한 위치'로 확정 •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계획
5-1	허용범위 ±3%의 적용 기준 면적이 사업면적 1,145.2㎡에 한정되는 것인지 또는 사업면적 1,145.2㎡와 필로티 면적 163.5㎡를 합산한 면적에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	• [질의 3-3] 참조
5-2	레벨값이 표현된 도면(현황측량도 등) 요청	• [질의 2-1] 참조

6-1	기존 다목적강당 옥상부에 대하여 구조안전성 확보 및 관련 법규 준수를 전제로 일부 증축 또는 기존 구조체의 변경·보강 계획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.	• [질의 1-4] 참조 • 금회 사업은 증축(1,145.2㎡)이며, 기존 다목적강당의 구조 보강 및 옥상부 증축에 대한 설계비·공사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6-2	기존 교사동과 증축동의 연결 위치 및 연결 층이 지정되어 있는지, 또는 이용자 동선과 안전성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설계자가 제안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	• 연결 위치와 층은 지정하지 않습니다. 아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설계자가 제안하시기 바랍니다. - 증축동 다목적강당과 연결 계획 (공모지침서 III. 설계지침 2.1 가.2)) - 학생 안전을 위해 기존 교사동과 연결통로 계획(III. 설계지침 1.2 다.5)) - 연결부위 경사로 및 계단 설치 고려(III. 설계지침 2.1 다.8)) • 참고로 사전기획보고서의 예시는 증축동 2층 홀과 다목적강당 2층 홀을 연결하는 안이며, 양 홀 간 레벨차는 약 400mm입니다(p.55).
6-3	스페이스프로그램에 제시된 필로티 163.5㎡는 계획예시 면적인지, 사업면적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면적을 조정하여 계획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	• [질의 3-3] 참조
7-1	명확한 최대층수 공지 요망(사전기획보고서, 지침서, 현장설명 내용상이)	• 최대 층수는 지상 3층 이하이며, 이는 준수사항입니다. - 과업지침서 1.3 4)(4)의 '지상 5층 이하'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학교시설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상 층수 한도이며, 사업 계획 규모를 의미하지 않음 - 사전기획보고서의 지상 4층 계획안은 사업규모가 축소되기 전의 검토안으로, 재정투자심사 재심사(2025. 2. 4. 적정)에서 지상 3층·1,145.2㎡로 축소 승인됨 - 사전기획보고서는 참고자료이며, 층수·규모에 관한 기재는 적용하지 않음 (근거 : 공고서 2. 다.4) / 공모지침서 p.18 2.1 가.4) / 과업지침서 p.3 1.3 7)(2) ①)
7-2	면적기준 중 필로티 면적(163제곱미터)에 대한 오차율 기준 질의(지침서상 시설면적1145제곱미터와 별도로 기재되어있고, 시설면적 및 조리실면적에 대한 오차율만 기입되어있음)	• [질의 3-3] 참조
7-3	사전기획보고서를 보면 운동장을 감싸는 트랙이 비상도로때문에 건물쪽에서는 끊긴것으로 보이는데, 실제 이런 방식이어도 괜찮은건지 or 트랙까지 포함하여 운동장영역 자체를 줄여야하는건지 문의	• [질의 1-2] 참조 • 트랙을 이용한 체육수업 및 학교행사 운영이 가능한 여건을 갖춘 경우 조정 가능합니다. 1) 공통 조건 — 체육수업 운영 여건 확보 - 트랙은 학교 체육수업과 학교행사(운동회 등)에 상시 사용되는 시설임니

		다. 선형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이 연속하여 주행할 수 있는 순환 주로를 확보합니다. 2) 트랙 선형이 일부 단절되는 계획 - 단절 구간을 트랙과 동일한 레벨로 조성하고 평상시 주행에 지장이 없는 포장으로 계획할 것 - 차량 통행 시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(차단시설, 노면표시, 시야 확보 등)을 함께 제시할 것 - 단절 구간을 포함한 순환 주로의 연속성이 유지됨을 평면도에 표기할 것.
7-4	증축가능영역이 글로 표기된 것이 아니라 도면자료로서 표기된건 사전기획보고서가 유일함. 이 도면자료를 건축가능영역으로 보면 되는건지 문의. 아니라면 별도로 공지 요망.	• 사전기획보고서의 배치대안 검토 도면은 참고자료이며, 건축가능영역을 확정 한 도면이 아닙니다. • 증축 가능 영역의 한계선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습니다. 증축 위치는 공모지침서 III. 설계지침 1.2 다.1) 및 2.1 나.1)에 따라 '운동장 서측, 서측 스탠드 구역 ~ 다목적강당과 연결이 가능한 위치'로 확정되어 있으며, 그 범위에서 설계자가 배치를 제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사전기획보고서는 참고사항이며 가능 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(공모지침서 III. 설계지침 2.1 가.14)).
7-5	본관동 1층 도면이 현장과 상이함. 제공된 도면상으로는 운동장쪽에서 1층 필로티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데, 현장에서는 별도의 실로 막혀있었음. 준공된 도면으로 제공 요망.	• [질의 2-2] 참조
8-1	지침서 page 4 / 사전기획보고서 page 8 설계공모 지침서 p.4의 사업규모에는 '지상 3층(지하 없음)'으로 명시되어 있으나, 참고자료로 제공된 사전기획보고서 p.8의 개략 평·단면 계획안 등에는 '지상 4층'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. 대지 조건 및 합리적인 실별 기능 배치를 위해 지침서의 지상 3층 제한을 넘어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지상 4층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지, 아니면 지상 3층 이하 계획이 필수 준수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	• [질의 7-1] 참조
8-2	지침서 page 20 지침서상 필로티 면적이 163.5㎡로 제시되어 있으며, 이는 증축 연	• [질의 3-3] 참조

	면적(1,145.2㎡)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 급식·소방차량의 회차 동선, 하역 공간 확보 및 1층 외부 다목적 공간 활용 계획에 따라 필로티 면적의 상당한 증감이 예상되는바, 필로티 면적(163.5㎡) 역시 실내 면적과 동일하게 ±3% 이내의 제한을 받는지, 아니면 기능적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자율적으로 면적을 증감하여 계획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.	
8-3	지침서 page 20 지침서 p.20에 “사업면적 제한 범위 내에서 개소 및 소요면적의 조정 가능(사업면적(1,145.2㎡) 및 조리장 면적은 ±3% 이내에서 조정 가능함)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. 문맥상 ‘전체 사업면적’과 ‘조리장’에 대해서만 ±3% 이내 조정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데, 조리장을 제외한 타 실들(학생식당, 특별교실, 지원실, 공용부 등)의 경우 전체 사업면적 한도(±3%)를 준수한다면 개별 실 면적도 ±3% 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조정·계획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	• 조리장을 제외한 각 실에는 개별 오차율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 사업면적 총계 1,145.2㎡(±3%)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실별 소요면적을 조정하여 계획할 수 있습니다. • 다만 아래 요구조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. - 조리장 250㎡(±3%) - 학생식당 227석 이상, 교직원식당 44석 이상, 교직원식당 별도 구획 - 특별교실 3실(컴퓨터실·과학실·WEE클래스) 확보 - 화장실 남녀 각 1개소(특별교실 사용)
8-4	서식 9 서식 9 ‘개략공사비 산출서’ 양식에서 상단 두 번째 행의 ‘총계(원)’와 최하단의 ‘총 공사비(원)’ 항목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표기되어 있습니다. 설계설명서 서식 임의 변경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, 상단의 중복된 ‘총계’ 행을 삭제하고 작성해도 무방한지, 아니면 기존 서식 원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단 ‘총계’와 최하단 ‘총 공사비’란에 동일한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지 작성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	• 서식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8-5	대지 내 기존 시설(운동장, 체육시설, 지상주차장1)의 조정 및 변경 범위에 관한 질의 증축동의 원활한 급식 배송 및 소방차량 접근로/회차로 확보, 학생 보행안전을 위한 완전한 보차분리 동선 계획 시 기존 시설과의 물리적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부대토목 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.	• [질의 1-2], [질의 2-3] 참조 • 운동장·트랙·축구장의 규격은 『학교운동장 시설기준 및 설계지침』(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-3175, 2015. 5. 20.)을 참고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[과업지침서 3.4 3) (5) ⑨] • 주차구획 변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. - 주차구획 변경은 별도 예산 고려가 되어있지 않으므로, 변경 최소화 - 변경 후에도 기존 36대와 신설 6대를 합한 42대 이상 확보

	운동장 및 체육시설(트랙, 축구장) 변경 관련 - 차량 진입로 및 증축동 배치를 위해 운동장 경계(영역)의 부분적 조정 및 체육시설(트랙, 축구장)의 위치 이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. - 만약 위치 이동이 불가하다면, 안전한 진입로 조성을 위해 운동장 내 우레탄 트랙의 규격/길이 일부 축소 및 축구장 규격의 부분적 축소가 허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. - 아울러 위 계획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서울시교육청 기준의 운동장, 직선/곡선 트랙, 축구장 등의 최소 허용규격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	- 「주차장법」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」 및 『서울학교 주차장 관리 계획』 준수 • 모든 조정은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.
	기존 '지상주차장1' 변경 관련 위 운동장 진입로 계획 및 증축동 차량 접근 동선과 연계하여, 지침서상 요구되는 주차대수 충족하는 조건하에 기존 '지상주차장1'의 주차구획 일부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.	
9-1	배치계획- 지침상 건물 배치상의 계획 한계선 및 구획이 없어보입니다. 본관동 앞의 외부공간인 운동장,놀이터,주차장,야외스탠드의 레이아웃을 공사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건물을 배치해도 상관없는지 질의 드립니다	• 외부공간의 자유로운 재구성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닙니다. • [질의 1-2], [질의 2-3], [질의 7-3], [질의 7-4] 참조
9-2	주차구획- 새로 추가되는 10대의 주차구획을 기존의 주차장 구획에 포함시켜 대수를 추가해도 상관없는지 질의 드립니다.	• 신설 주차대수는 10대가 아닌 6대입니다. 증축 후 총 42대(기존 36대 + 신설 6대)를 확보하여야 합니다. • 사전기획보고서 p.54의 '주차대수 10대 필요'는 지상 4층·연면적 1,595.4㎡ 계획안을 전제로 한 검토치이며, 재정투자심사에서 지상 3층·1,145.2㎡로 축소 승인됨에 따라 적용하지 않습니다. 사전기획보고서 p.4 기본현황표에도 '주차대수 6대 추가(36대 → 42대)'로 정리되어 있습니다. • 그 밖에 사항은 [질의 8-5] 참조, 급식·소방차량 동선 및 보행안전 확보 필수
9-3	실면적- 컴퓨터실 및 과학실의 경우 면적상 각2개소 확보를 염두해 둔 것 같으나 실개소 대한 명확한 요구조건이 없습니다. 설계자의 임의로 실의 개소를 제안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.	• [질의 8-3] 참조 • 특별교실은 컴퓨터실 1실, 과학실 1실, WEE클래스 1실로 총 3실입니다. •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컴퓨터실 101.25㎡ 및 과학실 101.25㎡는 각 1실의

		면적이며, 2개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 실 개소의 임의 변경은 불가 (근거 : 과업지침서 p.3 1.3 7)(3) 학교요구사항 — 특별교실 3실 확보)
9-4	장애인- 본 계획은 bf기준 설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. 증축시에 발생하는 건물 간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지침상 요구되는 램프 및 계단 설치 요구에 대해 계단만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용엘레베이터가 있다면 별도의 램프설치를 안해도 되는지 질의하며 램프를 설치해야 한다면 연결통로와 연결되는 기존 건물의 공간에 램프를 계획하여도 상관없는지 질의 드립니다.	• 장애인 편의시설은 관련 법령 및 인증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자가 계획하시기 바랍니다. • BF 인증 업무는 공고서 2. 라. 3)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• 연결통로 접속부 경사로를 기존 건축물 측 공간에 계획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(기존 건축물의 피난·이용 동선에 지장이 없을 것, 예정공사비 범위 내).
10	지침서에 필로티 면적이 163.5 헤베로 명시 되어있는데 자유롭게 변경 가능 할지 질의 드립니다.	• [질의 3-3] 참조
11-1	공모지침서 20p 스페이스프로그램에 필로티 면적이 기재되어있는데, 필로티는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	• [질의 3-3] 참조
11-2	공모지침서 18p - 가. 4)에서 지상 3층 이하 규모로 기재되어있는데 지상 4층 계획도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.	• [질의 7-1] 참조
11-3	과업지침서 3p - 7) (3)학교요구사항에서 증축 후 기존 급식실, 학생식당 리모델링 전환계획과 기존 일반교실, 기존 특별교실 존치 활용도 용역범위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.	• 금회 설계 용역범위에서 제외됩니다. - 과업지침서 1.3 7)(3)의 기존 급식실·학생식당 전환계획(늘봄교실 1, 돌봄교실 3, 연계형돌봄교실 1, 교사연구실 1)과 기존 일반교실·특별교실의 전환·존치 활용은 증축 계획 수립 시 참고할 학교 운영계획이며, 설계 대상이 아닙니다. - 예정공사비 및 예정설계비 산출 시에도 기존 급식실 리모델링분을 제외하여 산정하였습니다. - 과업지침서 1.3 7)(1) 공공건축심의 조건부 의견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, 건축물 설계공모에 별도의 환경개선공사 설계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후 심의 기준에 따라 과업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. • 따라서 응모안에는 증축동(1,145.2㎡) 계획만 포함하시면 되며, 기존 교사동의 실 전환 계획은 요구하지 않습니다.
11-4	학교 운동장의 일부 면적을 축소하여 기존 운동장 부지 내 증축하	• [질의 8-5] 참조

	는 계획안도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	
12-1	주차장 10대 추가 확보는 의무 사항인지요, 혹은 계획에 따라 대수를 증감시킬 수 있는지요? (법정 주차 대수 준수 전제 하)	• [질의 9-2] 참조
12-2	기존 건물 관련하여, 연결통로를 계획하게 될 부분 이외에도, 다목적강당 1층 공간 및 다목적 강당의 옥상을 계획 가능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?	• 포함할 수 없습니다 • [질의 6-1], [질의 11-3] 참조
12-3	만약, 다목적 강당 1층 공간도 계획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면, 1층 기존 공간을 증축될 부분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가능할지요?	
12-4	사전 기획보고서에서 사용된 3d 모델링(사이트 주변과 학교의 기존 건물)을 혹시 참가자들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?	• 사전기획용역 과정에서 작성된 3D 모델링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13-1	현황측량성과도 (CAD) 자료 제공 여부 및 제공 불가 하면 2011년 지반조사보고서의 조사위치도(CAD) 제공 가능 여부	• [질의 2-1] 참조
13-2	증축 가능 영역의 표현이 없어서 계획 시 운동장 영역 침범은 설계자의 재량으로 계획하면 되는지	• [질의 8-5] 참조